

검 토 보 고 서

의안
번호

제63호

2021. 05. 25.

건명	202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		
제안 및 제출자	논산시장	제출연월일	2021. 05. 17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21. 05. 17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(원안가결, 2020년 12월 09일)하였으나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변경(취득) 사유가 발생하여 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3건 중 1건 변경
 -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
 - 당초 : 부적면 덕평리 산50-1번지 외 11필지(34,573㎡)
 - 변경 : 광석면 사월리 177-1번지 외 21필지(39,131㎡)

□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

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64호
----------	------

2021. 05. 25.

건명	2021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		
제안 및 제출자	논산시장	제출연월일	2021. 05. 17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21. 05. 17.

보 고 내 용

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, 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함.

주요내용

- 2021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2건

연번	사업명	소관부서	비고
1	탑정호 웰니스파크 조성사업	미래사업과	
2	논산시 애견파크 조성사업	축수산과	

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